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 상향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1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 상향	2
※ 참고자료	6
1. 산재기금 예산 현황	6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30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 상향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u>100분의 8 이상</u> 을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 ----- ----- <u>100분의 15 이상</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공단(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1)에 따른 용도,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사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위 용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제4호)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용도(제6호)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법 제96조제1항각호의 용도 중에서도 제4호 및 제6호의 용도가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 8%로 정하여진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기하고 산업재해 대응 정책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으나, 법정 보험급여 지급이나 이미 발생한 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재기금의 예산 편성에 고정적인 법정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병원 인프라 조성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등 재해근로자 복지 증진도 기금의 중요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바, 그간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제시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매년 충족 가능한 수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사업 예산 규모 및 산재기금 지출 대비 산재예방사업 편성비율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26년 처음으로 15%를 초과한 16.3%가 되었음. 이 비율은 2020년에는 8.2%였고, 2021년 14.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2025년의 5년간 비율이 14%대였음(참고자료 산재기금 예산 현황 참조). 한편 사고재해자 수는 2020년 92,383명 대비 2024년 115,773명으로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급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산재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산재예방사업 편성비율이 처음으로 15%를 초과한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15% 이상을 법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향후 기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예방사업의 추가 소요가 명확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금지출총액의 15% 이상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실제로 현재도 산재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는바, 산재예방사업 예산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위하여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보다 기금에의 일반회

계 전입금 확보가 더욱 필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산재예방에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나, 기금은 다양한 용도로 투자되어야 하고 매번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예방사업에의 투자 규모를 15% 이상으로 고정하는 강행 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8

참고

산재기금 예산 현황

□ (총액) '26년 산재기금 총 예산 규모는 10조 4,720억원(+4.5%)

○(예방사업) 이중 산재예방사업은 1조 7,051억원

- '20년 5.6천억원 대비 약 3배 증가(+1조 1천억, 197.7%)

- 산재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6.3% 수준으로 '20년 8.2%에서 매년 증가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산재기금 지출예산	69,061	80,990	88,844	96,406	98,222	100,176	104,720
예방사업 예산	5,681	11,317	12,552	13,673	14,587	14,711	17,051
예방사업 비율	8.2	14.0	14.1	14.2	14.9	14.7	16.3
일반회계 전입금	155	163	183	200	213	213	313
산재보험 운영	63	63	63	63	63	63	63
예방사업 (지출대비 비율)	92 (0.13)	100 (0.12)	120 (0.14)	137 (0.14)	150 (0.15)	150 (0.15)	250 (0.24)

